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6월 3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7월 2일

3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인용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인용 조항 정정(안 제4조)
 - 제4조제3항 단서 중 “제2항제3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정정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주희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잘못 표기된 인용조항을 정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 및 의견

- 안 제4조는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%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제외 대상이 현행 제2항제3호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2항제2호로 정정하려는 것임.

- 본 개정안은,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 없음에도 불구하고, 제2항제3호로 잘못 표기된 것을 제2항제2호로 바로잡는, 단순 잘못 표기의 정정에 관한 사항으로 문제가 없음.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</p> <p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</p> <p>가. 충청북도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</p> <p>나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</p> <p>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</p> <p>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<u>제2항제3호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항제2호</u> ----- -----.</p>